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하베스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신탁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20년 11월 24일

3. 변경사유

- 펀드명 변경
- 전자증권법령에 따른 변경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 현행 | 개정 |
|--|---|
| 펀드명: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펀드명: 칸서스하베스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 하베스트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이라 한다. (이하생략)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하베스트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이라 한다. (현행과 동일) |
|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이하생략) |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현행과 동일) |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

| | |
|--|--|
| <p>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이하생략)</p> | <p>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p> |
| <p>제12조(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제4항의 일정한 날의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생략)</p> | <p>제12조(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제4항의 일정한 날의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u>수익자</u>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u>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현행과 동일)</p> |
| <p>제13조(자산운용지시등)</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p> | <p>제13조(자산운용지시등)</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u>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p> |

| | |
|--|---|
| <p>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②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 <p>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②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
| <p>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결재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 <p>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
| <p>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7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p>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금액: 제37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 <p>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생략) | <p>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현행과 동일) |

| | |
|---|---|
|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p>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생략) 3.<신설> | <p>제47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
| <p>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p> | <p>제48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p> |

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 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